



의무적 격리 조치 안내 (마닐라 지역 외 국가 여행자)

1. 배경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2020년 3월 13일,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했다. 이어 2020년 3월 16일,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괌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지시 2020-04을 선포했다. 괌을 입국하려는 코로나19 감염지역의 여행객들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가 적용된다.

의무적인 격리조치는 여행자가 괌 보건 사회 복지국(이하 DPHSS)의 인증을 받은 "코로나19 비 감염 증명서"¹(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적용된다. 본 증명서는 괌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괌으로 귀국하는 거주민들도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시 증명서가 없을 경우 최소 14일 자가격리 조치된다.

코로나19는 대부분 경미한 질병을 유발하지만, 사람에 따라 폐렴이나 심한 급성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조치는 코로나19를 식별하고, 의심환자 및 확진자를 격리 조치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도착 전

괌 국제공항 착륙 전, 괌 출입국 관리 검역국(이하 CQA)이 승객명단을 확인하고, DPHSS 및 공공사업부(이하 DPW)와 협력하여 승객들의 입국을 준비한다.

이륙 전, 승객들은 기내에서 보건질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질의서 작성 시, 잠재적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 보건 질의서는 착륙 전, 승객들이 승무원에게 제출한다.

1: 몇몇 국가에서도 입국 조건으로 괌 현지 법과 유사한 비감염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증명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Federal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인증한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 국가들이 법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증명서를 통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DPHSS에 의해 사전 승인된 증명서는 없다.



3. 도착

명백한 질병의 징후가 나타나는 승객은 항공기에 남아 DPHSS 직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DPHSS는 질병 징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착하는 모든 승객을 물리적으로 관찰하고 열 감지기 검사를 실시한다.

4. 분리

DPHSS와 CQA는 입국 승객들을 세가지 범주로 분리한다.

- (1) 질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
- (2) 비감염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3) 비감염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

18세 미만의 승객이 있는 가족들은 각각 나누지 않으며, 구성원들의 범주가 다를 경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취급된다.

5. 격리 및 검역

- A. 질병의 징후가 있는 사람에 대해 DPHSS는 격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 B. 비감염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CQA는 증명서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해당 증명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승객의 관 내 연락처를 수집한 후 추가 검역 없이 입국을 허용한다.
- C. 비감염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된다. 지정된 구역에서 DPHSS는 모든 개인을 면담하여 자발적 자가격리 적합성을 결정한다. DPHSS는 지역사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 (예 관광객)은 자가격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주민 또는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 자가격리 장소가 허용 가능한 장소인지 면담하여야 한다.

모든 자가격리 장소는 DPHSS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격리소 최초 연락

승인된 장소에서 비자발적 격리:

- a. DPHSS는 격리될 사람의 이름으로 접수처에 연락한다.
- b. DPHSS는 승인된 격리소의 도착 예정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c. DPHSS는 승인된 격리소로 호위 수송을 제공해야 한다.
- d. 관 경찰청 (이하 GPD)/DPHSS는 호텔 직원이나 투숙객이 자가 격리자와 우발적



인 접촉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자발적 격리:

- a. 현지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받는다.
- b. 격리자는 자가격리를 위해 나열된 장소로 이동만 제한되며 최소 14일간 DPHSS의 모니터링을 받는다.

7. 비자발적 격리소 내

격리 장소가 호텔인 경우 GPD/DPHSS는 격리자의 격리를 위하여 호텔 직원과 협력해야 한다. 이에는 타월과 시트 교체, 음식 서비스 배달, 필요 물품 조달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가 포함된다.

격리자에게 질병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DPHSS는 필요한 수칙에 따라 격리하고 치료를 제공한다.

8. 격리해제

특이사항 없이 격리기간이 종료되면 DPHSS는 절차에 따라 개인을 신속하게 격리해제 시킨다. 격리자가 격리기간 종료 전 귀국할 시, DPHSS는 괌 국제 공항으로의 운송을 준비해야 한다. 공항에서 CQA는 격리자를 인수받고 격리 심사 대상이 아닌 다른 개인과 우발적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